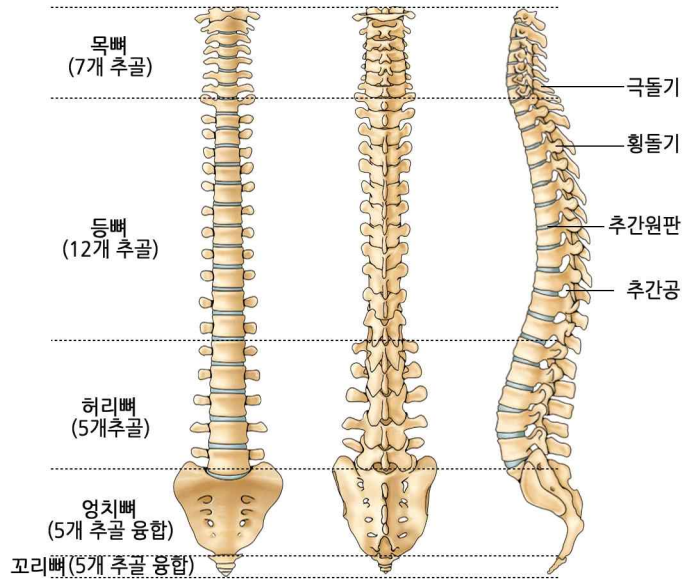


3. 척추의 장애



<척추 해부도>

가.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

장애등급	장애 정도
2급 4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척추의 기능에 극히 심한 장애가 남은 자 -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골유합되어 목뼈부 또는 등뼈부·허리뼈부의 운동기능이 4/5 이상 제한된 자 -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부, 등뼈부, 허리뼈부가 모두 완전강직된 자
3급 4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-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골유합되어 목뼈부 또는 등뼈부·허리뼈부의 운동기능이 2/3 이상 제한된 자 -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2번 이하부터 등뼈부·허리뼈부까지의 척추가 모두 완전강직된 자
4급 4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-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에 의하여 60도 이상의 척추뒤굽음 또는 40도 이상의 척추옆굽음 변형이 인정되는 자 -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골유합되어 목뼈부 또는 등뼈부·허리뼈부의 운동기능이 1/3 이상 제한된 자 -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부 또는 등뼈부·허리뼈부가 완전강직된 자

나. 인정요령

(1) 척추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.

(가) 척추의 장애는 기능장애와 변형장애로 구분하며, 기능장애는 수술시행 여부와 수술부위 및 CT, MRI, X-ray 등 영상의학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판정하고, 변형장애는 척추를 최대한 바르게 편 자세로 촬영한 영상의학검사 소견에 의하여 판정한다.

(나) 척추의 운동기능에 따른 장애등급은 <A표>에 의거 판정하고, 척추부위별 운동기능 제한 범위는 <B표>에 따라 고정된 각 척추분절의 운동기능의 합으로 결정한다.

- ① 고정되었거나 골유합된 척추의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,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.
- ② 등뼈부의 T10~T12 구간 중 한 분절 이상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허리뼈부의 운동기능장애에 합산하여 인정한다.

<A표: 척추부위별 운동제한범위 기준표>

척추 부위	운동영역 정상범위	운동기능 제한범위		
		2급 (4/5 이상)	3급 (2/3 이상)	4급 (1/3 이상)
목뼈	95	76 이상	63 이상	31 이상
등뼈(T10-T12)·허리뼈	111	88 이상	74 이상	37 이상
허리뼈	90	72 이상	60 이상	30 이상

<B표: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>

목뼈부	운동기능	등뼈부	운동기능	허리뼈부	운동기능
Occiput-C1	13	T10-T11	9	T12-L1	12
C1-C2	10	T11-T12	12	L1-L2	12
C2-C3	8			L2-L3	14
C3-C4	13			L3-L4	15
C4-C5	12			L4-L5	17
C5-C6	17			L5-S1	20
C6-C7	16				
C7-T1	6				
합계(8분절)	95	합계(2분절)	21	합계(6분절)	90

- (다) 척추분절의 고정이란 골유합술이나 고정술을 시행하여 척추 한 분절 이상을 붙게 한 것을 말한다. 다만, 척추분절의 운동이 가능한 수술(척추인공관절 삽입술, 연성고정술, 와이어고정술 등)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.
 - (라) 결핵성 척추염이나 화농성 척추염으로 방사선사진상 척추분절의 골성유합으로 두 척추체가 완전히 붙은 상태는 골유합된 척추의 분절로 판단한다.
 - (마) “명백한 척추병변”이라 함은 임상증상과 CT, MRI, X-ray 등 영상의학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(바) 척추 수술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. 다만, 향후 고정기기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(2) 척추의 변형장애와 기능장애가 동일부위에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한다.
- (3) 강직성 척추질환의 경우 운동가능범위의 측정은 제3장 “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”에 의해 척추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로 판정하되, 최대운동각도를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경과, 방사선 소견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.
- (가) “완전강직”이란 방사선사진상 목뼈부 또는 등·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, 해당 척추부위의 운동가능범위(목뼈부 340도, 등·허리뼈부 240도)의 90% 이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.
 - (나) “완전유합”이란 방사선사진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.
 - ① 척추의 전종인대골화 또는 후종인대골화의 두께가 2mm 이상
 - ② 추체간 추간판의 완전골화
 - ③ 그 외 척추의 후외방 골유합 상태